

---

## 第 4 章

# 1998年度 議會運營

第1節	第59回	臨時會
第2節	第60回	臨時會
第3節	第61回	臨時會
第4節	第62回	臨時會
第5節	第63回	臨時會
第6節	第64回	定期會

# 第 4 章 1998年度 議會運營

## 第1節 第59回 臨時會

### 1. 第1次 本會議

#### 가. 의장단 선거

##### ○ 의장 선거

1998년 7월 8일 오전 10시 제3대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원구성을 위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였다. 등록을 마친 10명의 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연장 의원인 윤재순 의원의 사회(의장 직무대행)로 제3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선거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김현백의원 6표, 윤재순의원 4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청양읍 출신 김현백 의원이 제3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임기 2년동안의 의정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 ○ 부의장 선거

이어서 실시된 부의장 선거는 전반기의장으로 당선된 김현백 의장의 사회로 의장선출시와 같은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였다.

투표결과 운명희의원 5표, 박효신의원 5표로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비봉면출신 박효신의원이 제3대 청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가. 제5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59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8일, 1일간 운영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5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 7. 8 (수) 10:00	1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5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0		( 개 원 식 ) ○ 개 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의원선서 ○ 개 회 사 ○ 축 사 ○ 폐 식	
		(개원식 직후 기념촬영 및 다과회)	

**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이 선출되었다.

## 다. 개원식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과장(송재필)의 사회로 진행된 개원 행사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의 뜨거운 성원과 참석아래 검소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의원선서 - 의장 개회사 - 군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은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결연한 각오로 선서하였다.

한편 김현백 의장은 개회사에서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통해서 주민복지에 공헌하고 충실한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한차원 높은 지방경영과 행정개혁으로 재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민의 발이되어 열심히 땀을 군민여러분에게 약속하였다.

## 第2節 第60回 臨時會

제60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윤명희의원의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6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견

제60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6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 7. 22 (수) 10:00	1	개 회 식	
		1. 제6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 발전담당관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7. 23(목) 10:00	2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7. 24(금) 10:00	3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7. 25(토) 10:00	4	1. 군정에관한보고(계속)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2. 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7. 26(일)		공 휴 일	
7. 27~30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4일간
7. 31(금) 10:00	5	1. 조례안및일반안전처리	

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형직의원, 우봉명 의원이 선출되었다.

## **다. 군정에 관한 보고**

1998년도 상반기 주요군정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 발전담당관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보고(계속)**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3. 第3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보고(계속)**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어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보고되었다.

## **4. 第4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보고(계속)**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었으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이 보고되었다.



##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나.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

####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선임위원수 : 3명
- 선임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지방자치법 제56조)

-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선임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청양군의회	의 원	윤 명 희	대 표 위 원
청양읍 교월리	-	최 병 락	전직 공무원
남양면 금정리	-	최 명 규	전직 공무원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결산검사위원에 윤명희의원, 전직 공무원 최병락, 최명규씨 등 이상 3명이 선임되었다.

### 第3節 第61回 臨時會

제61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이종섭의원의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8월 27일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6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1회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1회추경예산액	증 감	비 고
계	92,936,882	97,117,300	4,180,418	4.50%
일반회계	75,197,086	78,041,112	2,844,026	3.78%
특별회계	17,739,796	19,076,188	1,336,392	7.5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998년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9인을 선임하였다.

◆ 선 임 위 원 명 단 ◆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중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라.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휴회키로 하였다.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견

위원장 직무대행인 윤재순위원의 진행으로 천우길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견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유성중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였다.

#### (4)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이에따른 질의·토론이 있었다.

###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토론이 있었다.

**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이에 따른 질의·토론이 있었다.

**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998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심사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10,220천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21,008천원으로 한다.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97,117,300	-	-	97,117,300	-
일반회계	78,041,112	-	-	78,041,112	-
특별회계	19,076,188	-	-	19,076,188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산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97,117,300	110,788	110,788	97,117,300	0.11
일반회계	78,041,112	110,788	110,788	78,041,112	0.14
특별회계	19,076,188	-	-	19,076,188	

○ 삭감액 조서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 정 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 역
관	항		감 액	증 액		
계			110,788	110,788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500,000	100,000		400,000	퇴직수당
	기획관리 (수당)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	8,588	8,588		0	공설운동장 임차료
	체육진흥관리 (임차료)					
보건및생활	환경개선	2,200	2,200		0	재정정보화 시스템프로 그램운영
	환경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지원 및 기타경비	예 비 비	1,310,220		110,788	1,421,008	

### 3. 第2次 本會議

#### 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회부일 : 1998. 8. 27                      ○ 심사보고일 : 1998. 9. 2
- 처리결과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천우길 예결특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나.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8.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당면한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본 청 : 205명
2. 의회사무과 : 10명
3. 직 속 기 관 : 126명
4. 사 업 소 : 9명
5. 읍 · 면 : 181명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인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8.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경제개발 등 고성장과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조직 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하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개성있고 탄력있는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직위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청양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실에 비서실, 부군수실에 공보담당을 두며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제3조(비서실) 비서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론수렴
2. 시책홍보등 효율적인 보좌기능

제4조(부군수직속 공보담당) 부군수직속 공보담당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2.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
3. 군정홍보
4. 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5.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6. 청양소식지 및 청양뉴스 제작 홍보

제5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정책구상
3. 중장기 기획수립 및 조정
4. 각종 지시사항
5. 의회지원업무
6. 군정발전연구 기획
7. 국제교류지원
8. 군수공약사업 추진 관리
9. 애향 장학회 운영
10.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11.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용
12. 지방재정 계획 수립
13.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
14. 예비비 관리
1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6. 지방재정 동원 및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17.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18.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리 요구사항 처리
19. 비위예방 대책과 처리
20.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21. 민원사무 처리상황 검열

2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3.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4.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5. 자치법규집 발간
26. 조례 재의 요구
27. 행정심판 지원 지도
28. 각종 제도개선사항 발굴
29.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 주관
30. 새시책사업 발굴 및 평가분석
31. 자체수익 증대방안 연구
32.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33. 경영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수지분석
34.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35. 문화재의 보호관리
36. 출판, 향교, 사찰관리
37.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38.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39. 종교에 관한 사항
40. 관광선전 및 개발
41.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
42. 전시문화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3. 개발촉진지구 기획수립

제6조(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사무
2.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3. 외국인 토지관리업무
4.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
5. 표준지 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람열람
6.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7. 지가정보 관계기관 제공 및 주민의견 수렴

8.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9.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
10.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
1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가격통제 사무
12. 종합민원실 운영
13. 지가확인원 열람·교부
14.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15. 인증기 관리
16. 기타 다른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지적업무 계획 조정
18. 지적공부 관리
1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0. 지적측량 검사
21. 지적복구 및 불부합지 정리
22. 지적측량장비 운영 및 비품관리
23. 지적관계 소송 수행
24. 지적에 관한 진정, 질의, 탄원서 처리
25. 지적삼각점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검사
26. 토지 이동지 민원처리
27. 지적재조사 업무
2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29. 지적전산 운영
30. 지적업무 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
31. 등기필 부분정리
32. 토지이동지 전산처리
33. 지적민원(창구 즉결, 유기한)처리
3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민원처리
35. 법인 등록번호 부여관리
36.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업무
37. 지적통계 관리
38. 등록번호 미등재 조사 등록

39. 세무관련 가세자료 및 기타 지적전산자료 정보제공
40. 지적전산 장비 운용관리
41.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42.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43. 청구민원의 즉결처리
44.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45. FAX민원 업무
46.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47.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48.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49. 철도 승차권 발매 업무
50.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
51.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 운영
52.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53. 여권업무
54.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업무
55. 자동차 검사업무
56. 외국인 등록
57.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58.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59. 건축물변경·말소·정정내용 대장 정리
60.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추진
61. 지적도면에 건축물 등록 관리
62. 건축물표시 변경등기 촉탁 및 등기필통지 소유권 정리
63. 건축인·허가
64. 건축신고실운영
65. 주택건설 사업승인
66. 농촌주택 개량사업
67.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8. 농촌빈집 정비
69.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70. 표준설계도서 관리
71. 주택자재 및 주택사업자 지도단속
72. 건축사 지도단속
73. 공동주택 관리
74. 대형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관리
75. 건축물 안전점검
76.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
77. 무허가 건축물 단속
78. 재해주택 복구
79. 건축업무 전산화 통계관리
80.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2. 공무원 임용, 징계, 소청
3.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4.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관리
5. 공무원 의료보험 업무
6. 제안제도
7.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8. 리 행정 및 시범 읍·면 지도 육성
9. 행정구역 개편
10. 행정장비 및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11. 선거 및 국민투표
12.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운영
13. 여론행정관리
14. 전시 지방행정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일용직 및 청경 임용 조정
16. 마을봉사의 날 운영
17. 시책업무 추진
18. 공무원 교육 운영

19. 반상회 운영
20. 적십자 업무
21. 지방자치제도 발전업무
22.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
23.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 복무원계 처리
24. 각종 회의 및 통제
25.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 업무
26. 공무원 표창
27. 보안업무
28. 행정서사업 지도감독
29. 총화협의회 운영
30. 문서수발 및 통제
31. 문서보존 및 도서관리
32. 공인관리 및 공인대장 정리
33.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34. 국경일 행사
35. 발간실 운영
3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운영
37. 청사방호
38. 당직관계
39. 자체충무계획 수립 시행
40. 통계조사
41. 통계연보 발간
42. 정보화 교육훈련
43. 팩시밀리 운영 유지관리
44.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45. 키폰시설 운영 유지관리
46. 무전시설 운영 유지관리
47. 행정전화, 모사전송시설, 전용회선, 정보통신시설, 이동통신시설관리
48. 통신보안 관리
49. 공공시설 통신기술 지원

50. 교환업무
51.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통신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52. 통신기술 교육훈련
53. 청내외 방송시설 운영관리
54. 행정정보화 계획수립 시행
55. 전산기기 도입 및 유지관리
56.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시행
57. 개인정보 보호제도 운영관리
58. 행정전산망 및 각종 정보통신망 운용관리
59. 정보화 교육훈련
60. 각종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용역개발에 따른 심의
61. 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62. 주전산기 도입 및 운영
63. 민방위 계획의 수립
64. 화재방 보호시설 관리유지 및 통제
65.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조치
6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67. 비상대책업무
68.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9. 전시 경보통제소 운영 관리
70. 민방공 계획 및 훈련실시
71. 등화, 음향관계, 비상방송, 제도운영
72. 민방위대 조직 편성
73. 민방위대 동원 자원파악, 주민의 통제·소산 및 수송
74. 민방위대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75. 관내 직장 민방위대장 및 읍면 기술지원대장의 지휘감독
76. 징집소집
77. 병적관리
78. 장정 신체검사
79. 제1 국민역 관리
80. 향토예비군 관리

81. 전역자 신상처리
82. 동원능력 판단자료 조사
83.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
84. 공익근무요원 전담관리
85. 새마을지도자 육성
86. 도의새마을운동 및 국민 정신운동 추진
87.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88. 충남정신발양
89.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
90.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91. 국민체육대회, 도민체전 개최 지원
92. 청양군 체육회 지원
93. 문화체육센터 운영
94. 직장 복싱팀 육성
95.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재무과) 재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균유잡종재산의 관리취득, 처분
2. 청양군세 조례, 규칙법령 제정, 개정, 폐지업무
3. 국·도·군세 부과 업무
4.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직권 등재
5.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도의 운영
6. 지방세 과세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처리
7.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운영
8. 지방세 15개세목 과세자료 전산 운영  
(군↔읍·면, 지방세 프로그램운용)
9. 지방세 통계자료 작성
10. 지방세 목표액 산정
11. 보통교부세 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자료 작성
12. 세입예산 추계 작성
13. 지방세 목표액 산정

14. 지방세법 제정, 개정, 폐지 등 의견수렴
15.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청접수 처리
16.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시가표준액 적용율 고시
1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고시
18.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사 및 결정
19. 지방세 홍보 및 납세선전 독려
20. 세무조사 업무
21. 지방세 신고납부 및 즉결민원 처리
22. 세수증대를 위한 계획, 연구
23. 지방세 과세물건 실태조사 실시
24.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 공람
25. 세입세출의 정리
26. 세입세출결산
27. 세출예산원인행위 및 지급행위
28. 입찰 및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입·제조)
29. 각종 군 유가증권의 수납보관
30. 군 금고의 감독
31. 재정연감 작성
32. 물품출납보관 처분
33. 재물조사
34. 국·도비(일반, 특별회계)재배정 수납 및 지출
35. 관급자재 조달 신청
36. 원천징수 불입(소득세, 특별주민세)
37. 정수물품 책정 등의 관리
38. 세입출외현금 정리
39. 차량 유지관리
40. 청사 냉·난방 및 전기관리
41. 실과,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 심사
42. 국·도·군세 지수부 관리
43. 지방세 전산 수납처리
44.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45. 세외수입 일반 관리
46.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관리
4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48. 보조금 관리
49. 자금배정
50. 채납처분
51. 세입금 과오납 반환
52. 수입증지 수불관리
53. 일반회계 세입결산
54. 유휴자금 관리
55. 지방세 자동이체 관리
56. 특별회계 총괄 관리
57. 채권 총괄 관리
58.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59. 은닉 국·공유잡종재산 색출 및 색출자 보상
60. 위임 국유잡종재산의 관리
61. 위임 도유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62. 군유잡종재산의 등기 사무
63. 군유잡종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64. 군 본청사 영선관리
65. 공관 및 관사 영선관리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2. 이재민 대책
3. 요 구호자에 대한 대책
4. 행여병인 및 사망자 처리
5. 구호물자 및 금품의 수집관리
6. 사회복지기금관리 및 지원
7. 군경보훈사업 지원
8.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9. 주민 의료보호업무처리,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및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10. 지역의료보험조합의사업, 재산상황의 검사감독,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11.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및 협조지원
12.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회수
13. 저소득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14. 이웃돕기 운동 전개 지원
15. 공원묘지 및 납골당 관리
16. 사회복지 법인 운영 관리
17. 사회복지시설 관리
18.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19.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
20. 공중제조업소 허가·신고 및 휴업·폐업 신고
21.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22.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23. 식품 제조업소 지도감독
24. 공중 제조업소 지도감독
25. 식품 위생업소 지도감독
26.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27.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28.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29. 집단급식소 신고 및 지도감독
30. 위생분야 면허증 발급
31. 모범업소 및 향토 특색음식 관리
32. 식품진흥 기금 관리
33. 공중이용시설 관리
34. 보육시설 운영 지도감독
35. 아동복지 증진
36. 청소년 복지증진
37.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감독
38.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39. 노인복지 증진

4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41. 군 및 읍·면 복지회관 관리
42.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
43.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관리
44.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익증진 사업
45. 여성단체 조직 및 육성
46.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47. 여성지위 향상
48. 여성 교양지도 및 생활화 방안 모색
49. 여성 직업 보호
50. 윤락여성 선도보호
51. 여성 상담소 운영지도 감독
52. 부녀 지도협의회 운영
5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54. 건전소비 문화 정착
55.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56. 편모, 모자가정 보호 지원
57. 건강한 주민 바람직한 가정상 정립
58. 사회복지사업기금 지원

제10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자연환경 보전 종합 대책 추진
4. 환경보전, 홍보교육
5.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 조사연구
6. 배출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
9. 토양·농경지 오염방지대책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1. 토양 측정망 관리
12. 각종 환경민원처리
13. 행락질서
1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15.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관리
16.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감독
17. 폐기물 관련 지도단속
18.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19. 쓰레기 종량제 추진
20. 청소업무 및 장비 인력관리
21. 일회용품 과대포장 등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업무
22. 공중변소 관리
23. 오수·분뇨·축산폐수 허가신고 관련업무 지도감독
24. 단독정화조 관리 분뇨 등 관련업무 지도감독
25. 수질오염방지 종합기획조정 처리 업무
26. 환경지도 단속 종합계획의 수립
27.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28. 환경오염 측정망 관리
29. 환경관리 모범업소 지정관리
30.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비용 관리
31.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단속
32.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33. 생활소음. 생활악취 대책
34.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5. 배출업소 폐기물 처리단속
36. 유해화학물질 관리
37.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38. 환경분야 기술지도
39. 오수, 축산폐수 지도단속
40. 환경 기동단속반 운영
41.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42. 수도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43. 상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44. 하수도 신설 관리
45. 지하수 관련 업무
46.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47. 수도사업 회계관리
48. 급수시설 공사
49. 상수도 수원·수질의 보존관리
50. 물관리 종합추진

제11조(농림과) 농림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관리 및 이용업무
2. 관광농업, 휴양산업 육성
3. 영농조합 법인 지도 육성
4. 농업경영인 및 농업단체의 지도 육성
5. 농민회관 관리
6. 쌀생산자 단체 육성
7. 농림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 산업기능요원 지도 육성지원
10.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운영
11. 농림사업 평가
12. 농어촌 활력화 시책 추진
13. 농업생산의 종합계획
14. 식량증산계획의 추진
15. 자급비료 증산 및 지력 증진
16. 농산물 재해대책 및 농업기상
17. 농업기계화 사업
18.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19. 농산물 병해충 방제 및 예찰
20. 농약 및 비료단속

21.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절
22. 토양 개량제 공급
23. 농산물 한·수해대책
24. 농업기계 사후 관리
25. 전작물 증산 장려
26.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27.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28.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29. 양곡수매 및 감독
30. 도정업자 지도감독
31. 대여양곡 방출 및 보관, 회수관리
32. 농산물 유통관리
33. 약용 및 특용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34. 특작, 과수, 원예전업농 육성
35. 구기자 재배기술 보급
36.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37. 구기자 생산자 단체 육성관리
38. 잠업 생산 지도
39.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
40. 1마을 1소득사업 추진
41.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2. 원예주산단지 조성 및 유통지원 사업 추진
43.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44. 축산단체 지도감독
45.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6. 축산업 허가 및 등록
47. 가축 통계조사
48. 가축시장 업무 지도
49. 초지조성 허가 및 사후관리
5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
51. 정부양곡 부산물 수급관리

52. 축산식품 판매업 허가 및 관리
53. 가축전염병 예방
54.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업 허가 및 단속
55. 축산분뇨처리사업
56. 내수면 어업지도 육성
57.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작성
58. 조림사업 계획 및 시행지도
59. 산림시업용 묘목 수급
60.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추비, 보식)
61. 천연림보육 사업
62. 농촌경제수 식재 및 지도
63.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관리
64. 토석채취 허가 지도
65. 산지이용계획
66. 보전임지 지정관리 및 전용허가
67. 사방사업 관계
68. 보안림 지정·해제 및 관리
69. 산림재해 예방
70. 산림 형질변경 허가
71.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72. 독립가 및 임업 후계자 육성
73. 밤나무 조림 재배 육성
74. 육림사업 추진
75. 임산물 이용 및 가공
76. 임업기술 지도 보급 및 교육
77. 임업 협동조합 육성
78. 산림무육(치수가꾸기, 덩굴제거)
79. 임업단체 육성 및 산림작업단 관리
80. 산림입지조사
81. 국·공유림 경영관리
82. 산림청소관 물품 및 극인관리

83. 산불방지
84. 산림병해충 방제
85. 산림사고 예방 및 산림사법 단속사건 처리
86. 야생조수 보호, 증식, 조수보호구 지정관리
87. 유해조수 구제허가 및 수렵장 운영
88. 제재시설 관리
89. 산지정화 및 보호수 관리
90.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91. 임산물 반출
92. 산림내 불법건조물 관리
93. 임도시설
94. 청원 산림보호 직원 관리
95.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96. 입목벌채 및 간벌 지도
97. 농림사업 지원 추진
98. 농특특별회계관리
99. 목재수급 조절
100. 수목굴채취허가 지도 및 운영관리
101. 사유림 협업 경영지도
102. 산촌 종합개발
103. 휴양림 수목원 및 삼림욕장 조성관리
104. 임업단체 육성 및 산림작업단 관리
105. 산림개발 기금 관리
106. 영림계획 편성 및 임업촉진지구 운영관리
107. 자연휴양림 시설운영관리

제12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공업 진흥
2. 저축업무
3. 시장유지 관리
4. 도량형기 단속

5. 과학기술 진흥
6. 물가안정대책 및 생활필수품 수급 조절
7. 제조담배 소매업의 지정 승인, 신고수리
8. 상공, 동자, 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9. 고용촉진 훈련 사업
10. 취업정보센터 운영
11.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12. 노동조합 건전 육성
13. 노사안정시책 추진
14. 노동정책에 관한 업무
15. 중소기업 육성 지도
16. 공장등록 및 관리
17. 공산품 품질관리
18. 전기용품 안전관리
19. 전기용품 안전관리
20. 관광 공예품 육성 지도
21. 공업단지 조성 및 운영
22. 불량공산품 신고센터 운영
23. 기업체 실태조사
24. 실수요자 증명
25. 승강기 관리
26. 유류 수급
27. 광업 및 염 생산업 지도 육성
28. 자동차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실시
29. 건설기계 관리
30. 자동차 사업 인·허가
31. 자동차 운수업체 및 사업자 지도감독
32.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감독
33.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34. 정류장 및 정류소 지도감독
35. 차량동원업무

36. 교통량 조사
37. 수송동원계획 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
38.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결정
2. 도립공원관리
3. 개발촉진지구사업
4. 지방도로 편입용지 보상
5.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체 면허 처분
7. 하천골재채취 간접 직영사업 추진
8. 온천 개발 및 관리
9. 주민편익사업
10. 새마을 시설물 관리
11.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육성
12. 오지도로 및 소도읍 정비
13. 군도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
14. 농어촌 도로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
15. 접도구역 관리
16. 도로굴착점용허가
17. 과적차량 단속
18. 풍수설해 대책
19.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20. 하천사업의 시행(신규)
21. 수방자재 비축관리
22. 수방단 조직 운영
23.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
24. 자연재난과 관련된 업무
25. 하천부지 점용사용 허가
26. 재해위험예상지 관리

27. 기성채 관리
28. 기타 하천에 관한 사항
29.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30. 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31.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32. 국공유재산관리 및(건설교통부)폐천부지
33. 교량(고가도로 포함), 터널의 안전점검
34. 대형건축물 및 노후블랑주택의 안전점검·지도 협의조정
3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지도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36. 피해시설물의 복구 총괄
37. 기타 인위재난에 관한 사항
38. 경지정리 사업
39. 관개시설 개·보수
40. 각종 농지개발조사의 집행 감독
41.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42. 양수기 관리
43. 경작로 포장업무
44. 밭 기반정비 업무
45. 한해대책
4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업무
47. 농업용 지하수 개발업무
48. 문화마을 정비업무
49. 농지개량계 운영관리
50. 국·공유재산관리(농림부)
51. 개간허가업무
52. 기타 농지업무에 관한 사항
53.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5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55. 토지형질변경 허가
56.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용지 및 공업단지 조성관리
57. 도시구역내 택지조성

- 58. 가로등 관리
- 59. 광고물 등 설치허가 및 관리 업무
- 60. 측량 및 설계
- 61. 국토공원화사업
- 62. 주요도로변 가꾸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②청양군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③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청양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청양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은 자치행정과장이 읍·면은 총무담당이 된다.

(별표4)의 (별지 제5호 서식)공인사고 보고서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청양군조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⑦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⑧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업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 ⑨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방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으로 한다.
- ⑩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 ⑪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 ⑫청양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 ⑬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부읍·면장”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 ⑭청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3조(기구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실·과장의 사무는 같은표의 오른쪽에 기재된 본청의 실·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기획감사실장의 분장사무중 통계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실장의 분장사무	기획감사실장
발전담당실장의 관장업무	기획감사실장
도의새마을과장의 분장사무중 도의새마을업무 및 건전생활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과장
도의새마을과장의 분장사무중 개발에 관한 업무	건설도시과장
내무과장의 분장사무중 민원계에 관한 업무	종합민원실장
지적과장의 관장사무	종합민원실장

환경보호과장의 분장사무중 위생업무에 관한 업무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의 분장사무중 주택에 관한 업무	종합민원실장
도시과장의 분장사무중 도시계에 관한 업무	건설도시과장
도시과장의 분장사무중 상하수도에 관한 업무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의 관장사무	농 립 과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분장사무중 민방위업무, 병사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분장사무중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	건설도시과장

**라.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8.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조직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과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읍·면 농민상담소를 폐지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및 읍·면의 농민상담소”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8.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이원화로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바.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8.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 사.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8.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 제안이유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9월 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결과에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4節 第62回 臨時會

제62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김형직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6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2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5일 1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6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9.15(화) 10:00	1	개 회 식 1. 제6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칠갑산도립공원구역해제건의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나. 칠갑산도립공원구역해제건의안

- 제안년월일 : 1998. 9. 8.                      ○ 제안자 : 이종섭의원의외 7인
- 제안이유

칠갑산도립공원이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5년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3년에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충족하는 편익시설과 휴식공간 확충이 미흡한 실정임

도립공원의 93.4%가 사유림이에도 표고버섯 재배목과 기타 목재채취, 토지매매, 저당권 설정등이 불가피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이에따라 청양군 차원의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립공원구역을 해제토록 건의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의문

도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종수 도의회 의장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우리 청양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칠갑산도립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은 1973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5년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그동안 개발여건의 미성숙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원지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지리적 여건과 지역특성을 살려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의 일방적인 집단시설지구 변경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충족하는 편익시설과 휴식공간의 확충마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칠갑산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도립공원지구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도립공원 관리주체인 충청남도의 과도한 규제와 미온적인 개발의지로 인하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립공원구역 면적의 93.4%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한 표고버섯 재배목과 기타 목재채취, 토지매매, 저당권설정등이 불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의원 일동은 과도한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적절한 개발이 불가능하고 사유림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보존과 개발의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고 칠갑산의 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도록 칠갑산도립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9. 15

청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이 선출되었다.

## 第5節 第63回 臨時會

제63회 청양군의회(임시회)는 우봉명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8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6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3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운영  
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6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998.10.21(수) 10:00	1	개 회 식 1. 제63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22~10.26		휴 회 (주요사업장답사)	
10. 27 (화)	2	1. 군정에관한질문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10. 28 (수)	3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 29 (목)	4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농림과, 지역경제과)	
10. 30 (금)	5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10. 31 (토)	6	1. 조례안및일반안건처리	

## 나. 주요사업장답사의견

1998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지를 답사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촉구하는등 의정활동 자료 수집과 함께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군내 22개 사업장을 의원 전원이 답사기로 의결하였다.

## 다. 휴회의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회기로 가결하였다.

##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이 선출되었다.

## 2. 第2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질문

군정에 관하여 윤명희의원외 8인이 질문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1. 군민대다수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정산면 마치리 청양음료를 인수하여 추진중인데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윤명희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기획감사실	2. '98 홍보용 청양신문 구독료 지출내역은	윤명희의원
	3. 청양소식지 발간 제작비 지출내역은?('97, '98)	
	4. '98 지방신문 특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5. 먹는샘물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성장가능성과 사업성과분석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또한 당초 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고 군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6. 각종 행정소송의 제기된 사유, 승소·패소내역, 패소원인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7. '98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은?	천우길의원
	8. 재정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확보실적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구체적인 사례는?	유성종의원
	9. 군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계획 및 앞으로 자체 경영사업의 추진전략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군 부채현황과 상환전망은?	
	10.'98년도 감사활동 실적은?	
	11.제2기 민선군수는 제3대 군의회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여 군민의 뜻을 따라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답변하기 바람.	
	12.최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박효신의원
	종합민원실	1. 금년도 자동차 신규등록 기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및 문제점은?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종합민원실	2. 지적공부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전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청양 11개리, 운곡 5개리를 완료하였는데 하반기 지금까지 실적 및 아직 미실시한 이동지 조사 추진계획을 앞당겨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우봉명의원
	3.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금년도 주택개량사업비 지원현황 및 개량실적과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박효신의원
자치행정과	1. 금년도 공직자 상·별 현황은?	윤명희의원
	2. '98 각종 체육대회 출전현황, 지원상황, 성과, 향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김형직의원
	3. 찾아가서 도와주는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봉사의날 운영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은?	윤재순의원
	4. 금년도 생활민원처리실적 및 주요 처리내역은?	
	5. 지난 9월 3일 대대적인 군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얼마만큼 우리 군민을 위하여 주민 봉위의 봉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하여는 미지수로 생각되며 조직개편에 따라 77명이라는 무보직 공직자의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관련근거(규정, 공문등) 사본첨부하여 답변하기 바람.	유성종의원
	6. 국유재산인 청양군 공설운동장을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방법등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7. 금번 군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시행한바 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활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박상진의원

### 3. 第3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제2차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었으며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 문 요 지	질문의원
재 무 과	1. '97,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과 추진중인 세수 증대방안은?	이종섭의원
	2. 정확한 군유재산 실태와 무단점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무단점용실태를 밝혀주기 바람.	우봉명의원
	3.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 현황 및 매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천우길의원
사회복지과	1.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지원기준, 각 사업별 지원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97, '98)	윤명희의원
	2.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등 6개 사업을 추진중인데 그동안 추진실적 및 성과와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은?	
	3. 이웃돕기 운동 전개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은?	윤재순의원
	4.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충령사 신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천우길의원
	5.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대책, 준공시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유성종의원
	6.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잇는 노령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지급실적 및 계획은	박상진의원
	7. 군내 어린이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보육시설별)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환경보호과	1. 하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 문제점, 향후 추진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이종섭의원
	2. 구봉광산 광해복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유성종의원
	3.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8천만원의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유성종의원
	4.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초기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97, '98년도 월별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과 분리수거실적 및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설치한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및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료를 제조 판매한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박상진의원
	6. 토종생물을 섭취하여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퇴치방안 및 '98년도 퇴치실적은?	

#### 4. 第4次 本會議

##### 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제3차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었으며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림과	1. 군내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내역 및 조합원 명단을 밝혀주기 바람.	윤명희의원
	2. '98 칠갑산 자연휴양림 주차비 징수내역은?	
	3. 귀농인 영농 사업자금 지원실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이종섭의원
	4. 금년도 임도설치 및 보수내역과 임도설치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김형직의원
	5. 산림훼손허가 현황 및 복구현황('97, '98)	
	6. 농업경영인현황 및 자금을 지원받고 이농한 현황과 이농사유는 무엇이며, 융자금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기 바람.	우봉명의원
	7. 농기계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금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과 사용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천우길의원
	8. '99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변경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유성종의원
	9.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적은?	
	10.1마을 1소득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는?	박상진의원
	11.금년도 육립사업 추진내역을 시행기관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12.농지전용 현황은?('96~'98)	박효신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지역경제과	1. 현재 추진중인 운곡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계획과 학당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계획을 재원별로 밝혀주기 바람.	윤명희의원
	2. 청양정기시장일에 청양 십자로 주변부터 청양 농·공고 방면으로 고추시장이 열려 차량과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이종섭의원
	3.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김형직의원
	4.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입주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은?	
	5. 충청남도 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에 있어 우리군의 출자액은 얼마이며, 결손처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우리군의 중소기업에 지원된 내역은?('98년도 운행별) 또한 부실운영시 시·군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은?	유성종의원
	6. 화성 및 비봉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원리금 미상환 업체에 대한 징수대책은?	박상진의원
	7. 경기침체에 따라 위축된 우리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박효신의원

## 5. 第5次 本會議

### 가.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제4차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었으며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군정에 관한 질문요지 ◆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건설도시과	1.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 미완공 지역에 대한 완결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이종섭의원
	2.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이 행락 성수기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청소요원의 일당이 저임금으로 작업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3.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 주차장 임대료 징수현황 및 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없는지?	
	4. 도로변 광고물 설치허가(신고 수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97, ’98)	김형직의원
	5. 재경지정리사업보다는 기존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등을 포장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재경지정리 사업 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우봉명의원
	6. 직할하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우리군의 총 필지수, 면적, 보상신청 필지수와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7. 금강연안의 수해상습지에 대한 수해대책 수립여부 및 향후 대책은?	
	8. ’98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 및 신축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사유와 문제점을 밝혀주기 바람.	천우길의원
	9. 금년도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 추진현황은?	
	10. 준용하천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하천별 소유지, 면적, m <sup>2</sup> 당 단가 현황 첨부)	유성종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건설도시과	11.청양읍 도시계획변경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이의발생에 대한 대책과 당초 2,860km <sup>2</sup> 에서 0.585km <sup>2</sup> 가 증(변경)되어 3.445km <sup>2</sup> 로 재정비코자 한바 이에 대한 용도지역별 변경내역은?	유성종의원
	12.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면서 계속 덧씌우기를 강행함으로써 노면이 높아져 강우시 인근 주택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배수가 잘 안되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13.지방도, 군도등 편입토지 등기대행 수수료 지출 내역은?(’96~’98)	윤명희의원
보건의료원	1. 가정간호사업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며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검토한적은 있는지, 검토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우봉명의원
	2. 의·약사관리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지도단속 실적은	천우길의원
	3. 거동불편자에 대한 읍·면별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현황 및 그동안 추진실적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람.	박상진의원
농촌지도소	1. 농민상담소 폐지이후 농민기술지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조직배양실, 새기술실습소,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실적 및 효과분석 내용은?	이종섭의원
	2. 농기계순회수리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바, 그간 농기계(콤바인)의 잦은 고장으로며 수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농기계고장 수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윤재순의원

실과별	질문요지	질문의원
농촌지도소	3. 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바 경쟁력있는 각종 양축기술 지도사업으로 농가에게 어느정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는지 답변하기 바람.	천우길의원
	4. '98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시 보고된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성과는?	박상진의원

#### 나. 의사일정변경의견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견을 금일 상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다.

#### 다.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견

○ 제출년월일 : 1998. 10. 24.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청양읍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거쳐 결정토록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양군수가 입안한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청양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쳤으며 의견서 작성 의원을 박상진의원과 박효신의원을 선임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하기로 하였다.

## 6. 第6次 本會議

### 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행정기구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기구설치조례간에 구성체제가 상이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2조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군 본 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리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감사실장

-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군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정책구상
- 각종 지시사항
- 의회지원업무
- 군수공약사업 추진 관리
-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 지방재정 계획 수립
-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리 요구사항 처리
-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법제 및 소송수행업무
- 각종 제도개선사항 발굴
- 새시책사업 발굴 및 평가분석
-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 문화재의 보호관리
- 출판, 향교, 사찰관리
-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 종교에 관한 사항
- 관광선전 및 개발
- 군민대상에 관한 사항

-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
- 군정홍보
- 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 전시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 청양소식지 및 청양뉴스 제작 홍보

## 2. 종합민원실장

-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사무
-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 외국인 토지관리업무
- 표준지 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람열람
-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 매매계약서 검인 업무
-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
-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
-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가격통제 사무
-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관리
-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 지적삼각점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검사
- 토지 이동지 민원처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 지적민원(창구 즉결, 유기한)처리
- 지적전산 장비 운용관리
-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 민원업무의 연구 및 발전
-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 여권업무

- 자동차 등록업무
- 건축인·허가
-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 주택자재 및 주택사업자 지도단속
- 건축사 지도단속
- 대형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관리
- 무허가 건축물 단속

### 3. 자치행정과장

-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
-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관리
-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 행정구역 개편
- 행정장비 및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 선거 및 국민투표
- 여론행정관리
- 마을봉사의 날 운영
- 공무원 교육 운영
- 지방자치제도 발전업무
-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
- 공무원 복무단속 및 제 복무원계 처리
- 주민이동, 관서이동, 비상대비 지방조직 업무
- 보안업무
- 문서수발 및 통제
- 공인관리 및 공인대장 정리
- 발간실 운영
- 통계조사
- 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통신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 청내외 방송시설 운영관리
- 행정전산망 및 각종 정보통신망 운용관리
- 민방위 계획의 수립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 비상대책업무
- 전시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민방공계획 및 훈련 실시
- 민방위대 조직 편성
- 민방위대 동원 자원파악, 주민의 통제·소산 및 수송
- 민방위대 주요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관내 직장 민방위대장 및 읍면 기술지원대장의 지휘감독
- 병무업무
- 공익근무요원 전담관리
- 새마을지도자 육성
- 도의새마을운동 및 국민 정신운동 추진
- 바르게살기운동 업무
- 충남정신발양
-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
- 문화체육센터 운영

#### 4. 재무과장

- 균유잡종재산의 관리취득, 처분
- 청양군세 조례, 규칙법령 제정, 개정, 폐지업무
- 국·도·군세 부과 업무
-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 및 직권 등재
-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운영
-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시가표준액 적용율 고시
- 세무조사 업무
- 세입세출의 정리 및 결산
- 입찰 및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입·제조)
- 군 금고의 감독
- 물품출납보관 처분
- 세입출외현금 정리
- 청사 냉·난방 및 전기관리

- 실과, 사업소, 읍·면의 일상경비 정산 심사
-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관리
- 보조금 관리
- 자금배정
- 체납처분
- 수입증지 수불관리
- 유휴자금 관리
- 특별회계 총괄 관리
- 채권 총괄 관리
-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군 본청사 영선관리
- 공관 및 관사 영선관리

#### 5. 사회복지과장

-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 요 구호자에 대한 대책
- 군경보훈사업 지원
-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
- 주민 의료보호업무처리,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및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 지역의료보험조합의사업, 재산상황의 검사감독, 의료보호대불금 징수
-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및 협조지원
- 공원묘지 및 납골당 관리
- 사회복지 법인 운영 관리
- 사회복지시설 관리
-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
- 아동복지 증진
- 청소년 복지증진
- 노인복지 증진
-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익증진 사업

- 여성지위 향상
- 여성 직업 보호
- 윤락여성 선도보호

#### 6.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업무
- 자연환경 보전 종합 대책 추진
-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관리
- 청소업무 및 장비 인력관리
- 오수·분뇨·축산폐수 허가신고 관련업무 지도감독
- 환경지도 단속 종합계획의 수립
-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 단속
-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 상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 상수도 수원·수질의 보존관리
- 물관리 종합추진

#### 7. 농림과장

- 농지관리 및 이용업무
- 농업경영인 및 농업단체의 지도 육성
- 농민회관 관리
-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운영
- 농어촌 활력화 시책 추진
-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절
- 농업기계 사후 관리
-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 양곡수매 및 감독
- 농산물 유통관리
- 약용 및 특용작물 증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 구기자 재배기술 보급

-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
- 1마을 1소득사업 추진
-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 가축시장 업무 지도
- 초지조성 허가 및 사후관리
- 내수면 어업지도 육성
- 조림사업 계획 및 시행지도
- 산림사업용 묘목 수급
-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관리
- 토석채취 허가 지도
- 육림사업 추진
- 임산물 이용 및 가공
- 산불방지
- 산림병해충 방제
- 임산물 반출
- 입목벌채 및 간벌 지도
- 휴양림 수목원 및 삼림욕장 조성관리

#### 8. 지역경제과장

- 상공업 진흥
- 물가안정대책 및 생활필수품 수급 조절
- 제조담배 소매업의 지정 승인, 신고수리
- 취업정보센터 운영
- 노사안정시책 추진
- 중소기업 육성 지도
-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 관리
- 공업단지 조성 및 운영
- 자동차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실시
- 자동차 운수업체 및 사업자 지도감독

- 차량동원업무
- 수송동원계획 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
-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9. 건설도시과장

-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결정
- 개발촉진지구사업
- 건설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사업
- 새마을 시설물 관리
-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 하천사업의 시행(신규)
- 자연재난과 관련된 업무
- 하천부지 점용사용 허가
- 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
- 대형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지도 협의조정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지도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 경지정리 사업
- 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무
- 한해대책
- 농지개량계 운영관리
- 개간허가업무
-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택지조성
- 광고물 등 설치허가 및 관리업무
- 주요도로변 가꾸기

###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장 등) ①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의료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①보건의료원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75-1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기술 개발
7.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 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4 장 사 업 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모덕사관리사무소의 위치는 청양군 목면 송암리에 둔다.
2.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둔다.

제11조(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 및 위생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모덕사관리사업소

- 가. 모덕사 사우 및 경내 수목의 보호관리
- 나. 모덕사 사우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의 보호관리
- 다. 면암 최익현 선생의 위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항
- 라. 참배객의 안내
- 마. 관람료의 징수
- 바. 기타 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생환경사업소

- 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 나.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발전
- 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의 분뇨의 위생처리에 관련되는 사항

## 제 5 장 읍 · 면

제13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청양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
2.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3. 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
4. 청양군모덕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
5.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기획담당”을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청양군에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기획담당”을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주무담당”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④청양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총무담당”을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읍면은 “총무담당”을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청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한다.

⑥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총무담당”을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⑦청양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담당”을 “담당주사”로 한다.

**보건지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청양군보건의료원	운곡면 모곡리 309	운곡면일원
”	대치면 시전리 508-3	대치면일원
”	정산면 역촌리 398-2	정산면일원
”	목 면 안심리 262-5	목 면일원
”	청남면 청소리 299	청남면일원
”	장평면 분향리 396-3	장평면일원
”	남양면 구룡리 75-1	남양면일원
”	화성면 구재리 256-6	화성면일원
”	비봉면 녹평리 52	비봉면일원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광보건의료소	운곡면 광암리	운곡면 광암리, 미량리, 추광리
장보건의료소	대치면 장곡리	대치면 장곡리, 광금리, 개곡리, 작천리, 구치리
와보건의료소	정산면 와촌리	정산면 와촌리, 신덕리, 내초리
지보건의료소	목 면 지곡리	목 면 지곡1·2리, 화양1·2리
왕보건의료소	청남면 왕진리	청남면 왕진1·2리, 인양리
화보건의료소	장평면 화산리	장평면 화산1·2리, 죽림리
백보건의료소	남양면 백금리	남양면 신왕1·2리, 백금1·2리
온보건의료소	남양면 온암리	남양면 매곡1·2리, 온암1·2리
수보건의료소	화성면 수정리	화성면 수정리, 용당리, 기덕리, 화암리
용보건의료소	비봉면 용천리	비봉면 용천리, 양사2리, 방한1·2리
해보건의료소	정산면 해남리	정산면 해남리, 송학리
신보건의료소	목 면 신흥리	목 면 신흥1·2리, 대평1·2리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청양읍사무소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1번지
운곡면사무소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293-2번지
대치면사무소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237-1번지
정산면사무소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496-1번지
목 면사무소	청양군 목 면 안심리 585-7번지
청남면사무소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84번지
장평면사무소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523-13번지
남양면사무소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19-1번지
화성면사무소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130-5번지
비봉면사무소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2-2번지

## 나.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현재의 정원관리기관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4~5개 단위로 구분)로 조례에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 정원조정이 탄력성을 보장하며 의회의 심의기능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청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 총            계            531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청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양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은 따로 청양군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9.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중 경노무 사환의 근무상한연령 “58세”를 “57세”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6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마.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재설계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의 기구 및 인력을 감축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원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바. 청양군소비자보호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9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98. 4. 1일부터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소비자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의 보장과 소비자 피해의 구제, 소비자단체 등록·지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 양 군 소 비 자 보 호 조 례 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양군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소비자” 및 “사업자”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군수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등
4. 소비자단체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기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 제 2 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 제1절 통 칙

제5조(소비자관련 정보제공) ①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군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청양소식, 반회보, 지역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2절 위해 및 불공정거래방지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 1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3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①군수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군 : 지역경제과
2. 읍·면사무소
3.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12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5조(시험, 검사, 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 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험, 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원
4.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 포함)
5.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④제13조 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 제4절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제16조(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정소식지에 공고한다.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①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제2항 각호의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양읍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소비자단체 임원등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실무위원회)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군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③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 4 장 보 칙

제27조(의견청취·검사등)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수당등) ①위원회의 위촉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지도단속)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 반원은 소관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등 조치

제30조(공표) ①군수는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청양군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 조정을 이미 거친 사용료, 수수료, 교통요금 등은 이 조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또는 요청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 사. 청양읍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견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쳤으며 제6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의 건 서

- 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청양읍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장래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된시설가운데 불필요하게된 시설을 해제하고 새로운 지역을 확충하여 결정한 계획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수립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업지역내에 터미널 등 시설이 입지하여 지역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부족한바 청양읍 시가지 주변으로 집중하는 인구증가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 또한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의 개발공간이 한계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완료되는 지역예의 주거용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 주민의 사유재산권 장기 침해로 주민으로부터 불평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공원지역에 있어서도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 입지지역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양군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1998. 10. 31

청 양 군 의 회 의 장

## 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제출년월일 : 1998. 10. 27.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상의하달 방식에서 탈피하여 하의상달방식으로 전환되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 바 제2기(1999년~2002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기 의회의결을 받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1월 2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 - 1999년~2002년 계획 -

####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 일반적 목표

- 지역주민의 생활양식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양개선사업과 구강건강관리사업을 강화

□ 세부목표

- 향후 4년간 우선사업으로 만성퇴행성질환중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사업을 선정 실시
- 노인층에 대한 보건서비스제공 다양화
- 의료혜택 취약계층(거동불능자, 중증장애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 전체 주민의 구강질환 감소를 위한 구강관리사업 강화
- 보건의료원을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
  - 현 보건의료원 이전신축(544평→968평)
- 전염병예방활동 지속적 수행
- 의·약사 수준향상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2. 지역사회 진단 결과

### □ 분석

지역사회 진단 결과 분석	
보건의료 수요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양군의 인구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65세이상 인구는 증가하고있어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li> <li>○ 경제활동 인구중 대부분이 1차 산업인구임(67%)</li> <li>○ 의료취약인구로 독거노인 47명, 장애인 693명, 노인부부 1,392가구, 소년소녀가장 9세대 등이 있음.</li> <li>○ 청양군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환자중 46%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타지역 의료기관 입원율은 99%에 이름.</li> <li>○ 청양군 주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으며, 위암, 간경변, 당뇨 등의 순서임.</li> <li>○ 30~6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42%로 노령화에 대비하여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의 예방적 조치가 요구됨.</li> </ul>
보건의료 공급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병원 1, 의원 8, 한의원 3, 치과의원 5개소 등 양호한 편이나, 지역별로 읍소재지와 정산면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li> <li>○ 진료인원에 비해서 입원환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음.</li> </ul>

□ 추 후 전 망

추 후 전 망	
보건의료 수요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양군은 65세이상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노령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가 요구됨.</li> <li>○ 청양군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마을별 이동순회진료와 보건교육, 영양개선사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li> <li>○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li> <li>○ 주민들의 보건의식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li> </ul>
보건의료 공급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주민중 노령화로 인한 요양 입원환자인 경우는 보건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li> <li>○ 청양군 5대 사망원인의 대부분인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의 강화, 식요법지도,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li> <li>○ 거동불능,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여 주민 개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업내용을 보건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함.</li> <li>○ 보건의료원 신축 이전하여 현대적 시설, 성인병검진 등을 위한 장비보강, 보건의료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제고, 각종 보건교육과 상담을 위한 공간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유지 요구에 부합되도록 할 것임.</li> </ul>

□ 진단과정의 평가

지 역 사 회 진 단 과 정 의 평 가	
평 가 및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조사가 기존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그쳐 실제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음.</li> <li>○ 보건의료정보의 자료수집이 어렵고 원하는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표본의 규모가 커야하므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됨.</li> <li>○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위한 조사지 개발과 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었고 조사, 분석에 필요한 절대시간 부족으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li> </ul>
향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순회진료 등과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평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임.</li> <li>○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시간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지 개발과 분석 등의 과정을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li> </ul>

### 3.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의 방향

사 업 명 기 관 별		보 건 의 료 사 업	기타
보건의료원	역할변화	중래 전염병대책 각종질환 사후관리 및 환자진료사업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전환	
	사업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둠</li> <li>·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확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기관에서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지속추진</li> <li>-노인보건, 정신보건,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방문보건의료사업 확대</li> </ul> </li> <li>· 보건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강보건사업 강화</li> <li>-전염병 예방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지속추진</li> </ul> </li> </ul>	
통합보건지소	역할변화	통합보건지소 설치계획 없음	
	사업계획방향		
보건지소	역할변화	보건지소장의 환자진료위주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전환	
	사업계획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둠</li> <li>·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확대실시</li> </ul>	
보건진료소	역할변화	진료권 지역내 보건의료에서 진료권외 지역사업 확대	
	사업계획방향	진료권외 지역에 대한 방문보건의료사업 확대	

#### 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단위:개소)

기관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b>1. 인력(단위:명)</b>					
-인력수	100				102
-교육·훈련수요인력수	31	35	35	40	40
계	131	35	35	40	40
<b>2. 예산(단위:천원)</b>					
-인건비	1,854,830	1,855,000	1,880,000	1,910,000	1,910,000
-사업비	646,247	777,867	785,132	881,352	961,747
-시설/장비 보강비	2,161,116	106,845	114,915	117,685	114,605
계	4,662,193	2,739,712	2,780,047	2,909,037	2,986,352
<b>3. 기관수(단위:개소)</b>					
-보건의료원	1	1	1	1	1
-통합보건지소	-	-	-	-	-
-보건지소	9	9	9	9	9
-보건진료소	12	12	12	12	12
계	22	22	22	22	22
<b>4. 지원이 필요한 기관수 (단위:개소)</b>					
-보건의료원	1				
-통합보건지소	-				
-보건지소	-	3	3	3	
-보건진료소	-	3	3	3	3
계	1	6	6	6	3

## 5.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내용 부분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현황	민간의료기관과의 향후연계방향	민간의료기관과의 구체적 추진계획
보건사업 부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계획시술대상자 시술</li> <li>· 주민예방접종실시</li> <li>· 각종보건계몽사업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연계사업보완 발전</li> <li>· 주민보건계몽 활성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보건계몽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li> </ul> </li> <li>·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계몽</li> </ul> </li> <li>·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집회, 학교, 경로당 등 방문홍보</li> </ul> </li> </ul> </li> </ul>
진료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직의료기관 편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의원급, 병원</li> </ul> </li> <li>○민간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진료위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직의료기관 편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병원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1개소, 민간 1개소</li> </ul> </li> </ul> </li> <li>○민간의료기관과 환자 진료와 질병예방 사업 병행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직의료기관 편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년중</li> <li>· 대상 : 보건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양성모병원</li> <li>24시간운영</li> </ul> </li> <li>· 응급환자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응급처치후 환자 상태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li> </ul> </li> </ul> </li> <li>○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단체 :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li> <li>· 추진방법 : 래원환자 진료시 질병 사전예방 요령 주지</li> </ul> </li> </ul>

□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서

의 건 서

청양군의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1C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행정 및 질병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보건의료원에서는 전염병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방문간호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써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지방자치행정의 실시, 주민연령의 고령화,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의료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건강관리 능력은 더욱 향상되어야 하는 변화의 시점에 위치한 현실에서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진료기능중심에서 건강관리기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인력의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고급화된 전산관리 시스템,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동검진차량의 확보 등 제반 의료장비와 시설의 확보도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분석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1998. 10. 31.

청 양 군 의 회 의 장 김 현 백

#### 자. 지적공부교부신청에따른청원

- 제출년월일 : 1998. 10. 8.                      ○ 소개의원 : 윤명희의원
- 청원인 :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25번지 정낙기
- 청원요지

청원인인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25번지 정낙기씨가 청양군수에게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을 교부신청 하였으나 이의 교부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군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주민의 그로인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는 청원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등을 제정하여 주민의 신청없이 등록 전환을 직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직권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를 1998년 11월 2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

## 第6節 第64回 定期會

제64회 청양군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3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 1. 第1次 本會議

#### 가. 제64회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견

제64회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64회 청양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 ◆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1월25일(수) 10:00	본회의	1	개 회 식 1. 제64청양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감사특위	1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6일(목)	본회의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11월27일(금)	"	3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11월28일(토)	"	4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환경보호과, 농림과)	
11월29일(일)			공 휴 일	일요일
11월30일(월)	본회의	5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12월 1일(화)	"	6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 조례안및일반안건 3. 휴회의건	12.2~12.8
12월 2일(수)	감사특위	2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군수 인사
12월 3일(목)	"	3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월 일	구 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 4일(금)	감사특위	4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2월 5일(토)	감사특위	5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2월 6일(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 7일(월)	감사특위	6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2월 8일(화)	"	7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2월 9일(수)	본회의	7	1. 1999년도예산안 -199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정연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조례안및일반안건 4. 휴회의건	군수 12.10~19
12월10일 (목)	예결특위	1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1999년도예산안	제안설명
12월11일( 금)	"	2	1. 1999년도예산안	
12월12일( 토)	"	3	1. 1999년도예산안	
12월13일( 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14일( 월)	예결특위	4	1. 1999년도예산안	
12월15일( 화)	"	5	1. 1999년도예산안	
12월16일( 수)	"	6	1. 1999년도예산안	

월 일	구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17일(목)	예결특위	7	1. 1999년도예산안	
12월18일(금)	"	8	1. 1999년도예산안	
12월19일(토)	"	9	1. 1999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의견	
12월20일(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21일(월)	본회의	8	1. 1999년도예산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조례안및일반안건 6. 휴회의건	12.22~24
12월22일(화)	예결특위	10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3일(수)	"	11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4일(목)	"	12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25일(금)			공 휴 일	성탄
12월26일(토)	본회의	9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월 일	구분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월27일(일)			공 휴 일	일요일
12월28일(월)	감사특위	8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2월29일(화)	본회의	10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조례안및일반안건	

#### 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기로 결정하였다.

#### 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98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9인을 선임하였다.

#### ◆ 선 임 위 원 명 단 ◆

윤명희의원, 이종섭의원, 김형직의원, 우봉명의원, 윤재순의원  
천우길의원, 유성종의원, 박상진의원, 박효신의원

## 2.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견

위원장직무대행인 윤재순위원의 진행으로 윤명희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견

위원장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김형직 위원이 추천되어 선임되었다.

#### (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견

감사특위 심사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다.

### ◆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

#### ◇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사기간

1998년 12월 2일 ~ 12월 8일(7일간)

◇ 감사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 군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과 동

◇ 감사반 편성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간 사	감사위원	보 조 직 원
· 청양군 (실·과) · 사업소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읍·면	윤명희	김형직	이종섭 우봉명 윤재순 천우길 유성중 박상진 박효신	- 사무과장 : 강석화 - 전문위원 : 김기룡 - 의사계장 : 곽병훈 - 의 사 계 : 이용만 오효섭 - 속 기사 : 2명

※ 감사반은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함.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감 사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998. 12. 2(수) 10:00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특별위원회실
1998. 12. 3(목) 10:00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
1998. 12. 4(금) 10:00	환경보호과, 농림과	”
1998. 12. 5(토) 10:00	지역경제과	”
1998. 12. 7(월) 10:00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
1998. 12. 8(수) 10:00	읍·면 현지확인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대 상 기 관	감 사 방 법	중요감사사항	비 고
· 군 청 (실·과) · 사업소 · 보건의료원 · 농업기술센터 · 읍·면	- 감사자료 보고 청취 - 자료분석과 질의 -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현지확인검증	감사자료요구 사항 (별첨)	- 관계인 출석 요구 -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및 실·과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관계 공무원과 필요시 일반주민)

◇ 소요경비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등은 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의장경유 피감사기관에 요구
-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음
-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
- 감사자료요구
  - 제출기한 : 1998. 11. 30. 12:00
  - 작성기준 : 1998. 1. 1~ 현재
  - 규 격 : A4 좌철(부득이한 경우 상철)
  - 제출부수 : 15부
  - 제출서식 : 임의서식(단 현황을 쉽게 알수있도록 사항별로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 첨부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사본 별첨)

(4)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실·과,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과 전 계장을 출석요구키로 하였다.

### 3. 第2次 本會議

#### 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 16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다.

#### 나.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 각 실·과, 직속기관 전 계장을 출석요구하였다.

#### 다.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는 실·과, 직속기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 4. 第3次 本會議

#### 가.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2차에 이어 환경보호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다.

## 5. 第4次 本會議

### 가.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3차에 이어 자치행정과, 농림과 소관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다.

## 6. 第5次 本會議

### 가.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4차에 이어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이 있었다.

## 7. 第6次 本會議

### 가. 1998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계속)

제5차에 이어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199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다.

### 나. 휴회의건

행정사무감사실시 관계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하였다.

## 8.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 가.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2월 8일까지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하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나.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다.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라.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마.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 바.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계속)

제6차에 이어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 9. 第7次 本會議

#### 가. 1999년도 예산안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원영 청양군수의 군정연설이 있었다.

####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1999년도 예산안을 회부하고 12월 21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였다.

#### ◆ 선 임 위 원 명 단 ◆

윤명희 의원, 이종섭 의원, 김형직 의원, 우봉명 의원, 윤재순 의원  
천우길 의원, 유성중 의원, 박상진 의원, 박효신 의원

#### 다.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견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다.

#### 라. 청양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출년월일 : 1998. 11. 30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제2건국 전국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활동방향제시와 더불어 추진과제등을 지방적 차원에서 뒷받침 하는 한편 더 나아가 범 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청양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당연직위원으로 청양군부군수, 청양군의회부의장, 청양경찰서 경무과장, 청양교육청 학무과장

2.청양읍장과 기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는 청양군의회의장, 청양경찰서장, 청양교육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수 있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제3조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마. '98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결정의견

○ 제출년월일 : 1998. 12. 4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98 농지세대상작물의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결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함.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농지세 평균 필요율은 다음과 같다.

**'98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조정결정(안)**

- '98 제2분기 중간예납 대상작물 평균필요경비율 권형조정내역 -  
(단위:%)

작 물 명		평균필요경비율	작 물 명		평균필요경비율
벼	노 지	68	들 깨	노 지	67
연 초	노 지	75	인 삼	노 지	74
배 추	노 지	69	구기자	노 지	77
무	노 지	66	생 강	노 지	70
사 과	노 지	71	땅 콩	노 지	69
배	노 지	70	밤	노 지	69
고 추	노 지	68	포 도	노 지	69
과	노 지	64	대 추	노 지	63
참 깨	노 지	67	복숭아	노 지	71

□ 조정조건

1.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사유로 인하여 본 평균필요경비율 적용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필요경비계산방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평균필요경비의계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 필요경비율 결정 적용
2. 상기 조정이외의 과세대상 작물과 가장 유사한 작물의 평균 필요경비율 적용
3.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본 필요경비는 과세연도 귀속

### '96~'97 농지세 부과현황

(단위:원)

구 분	과세현황				비고
	'96년도		'97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	430,630	7	426,870	
청양읍	1	36,600	1	130,010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 면					
청남면	4	169,230	3	148,140	
장평면	3	154,240	3	148,720	
남양면					
화성면	1	70,560			
비봉면					

## 바. 휴회의건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휴회기로 하였다.

# 10.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직무대행인 윤재순위원의 진행으로 유성종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 이어 간사에는 박상진위원이 추천 선임되었다.

## 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9년도예산안

- 제출년월일 : 1998. 11. 21.      ○ 제출자 : 청양군수
- 예결특위 회부일 : 1998. 12. 9.
- 심의내용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항목별 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제2차에 이어 1999년도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었다.

**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제3차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었다.

**마.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제4차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었다.

**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제5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었다.

**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제6차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항목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계속되었다.

**차.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9년도예산안(계속)**

제9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진행되었다.

**(2) 1999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견**

제9차 예결특위까지 심사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2,095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3,950천원으로 한다.

◇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산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84,709,669	-	-	84,709,669	-
일반회계	73,355,583	-	-	73,355,583	-
특별회계	11,354,086	-	-	11,354,086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산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산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84,709,669	676,155	676,155	84,709,669	0.8
일반회계	73,355,583	661,855	661,855	73,355,583	0.9
특별회계	11,354,086	14,300	14,300	11,354,086	0.13

○ 세입예산안(총괄)

(단위:천원)

구 분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 정 액		수정 후 예산액
		감 액	증 액	
계	84,709,669			84,709,669
일 반 회 계	73,355,583			73,355,583
지 방 세	4,427,387			4,427,387
세 외 수 입	5,960,280			5,960,280
경상적세외수입	2,646,307			2,646,307
임시적세외수입	3,313,973			3,313,973
지 방 교 부 세	26,869,318			26,869,318
지 방 양 여 금	6,063,280			6,063,280
보 조 금	27,335,318			27,335,318
국 고 보 조 금	13,202,817			13,202,817
도 비 보 조 금	14,132,501			14,132,501
지 방 채	2,700,000			2,700,000
국 내 차 입 금				
특 별 회 계	11,354,086			11,354,086
지 방 세	0			0
세 외 수 입	9,465,958			9,465,958
경상적세외수입	6,218,611			6,218,611
임시적세외수입	3,247,347			3,247,347
지 방 교 부 세	0			0
보 조 금	1,888,128			1,888,128
국 고 보 조 금	1,664,103			1,664,103
도 비 보 조 금	224,025			224,025
지 방 채				

○ 세출예산안(총괄)

(단위:천원)

장 별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예산액
		감액	증액	
계	84,709,669	676,155	676,155	84,709,669
일반회계	73,355,583	661,855	661,855	73,355,583
일반행정비	19,341,470	515,468		18,826,002
사회개발비	25,755,124	81,880		25,673,244
경제개발비	27,220,064	63,007		27,157,057
민방위비	321,991	1,500		320,491
지원및기타경비	716,934		661,855	1,378,789
특별회계	11,354,086	14,300	14,300	11,354,0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70,357	14,300	14,300	670,357
주택사업특별회계	223,226			223,226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1,704,156			1,704,156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00,180			200,180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0,602			130,602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4,872,909			4,872,909
골재채취특별회계	2,431,650			2,431,650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993,406			993,40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7,600			127,600

○ 삭감액 조서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661,855				
일반행정비				515,468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90,729			86,729		
			(4,000)	(4,000)		0	자치경영관리PC 기획관리PC구입	
		예산운영	6,797,931			6,524,931		
			(300,000)	(200,000)		(100,000)	명예퇴직수당	
			(173,000)	(73,000)		(100,000)	임의단체보조금	
	공보관리	공보관리	134,091			128,491		
			(5,600)	(5,600)		0	청양군특산물 홍보제품 구입	
	자치행정	자치행정 관 리		2,975,121			2,965,621	
				(7,000)	(3,500)		(3,500)	민선1기연설문집 발간
			(6,000)	(6,000)		0	정예공무원양성반 국외여비	
		서무통계 관 리	147,322			136,592		
		(4,960)	(2,480)		(2,480)	직장대항 경기 참가자 피복기		
		(8,250)	(8,250)		0	중대본부 방독면 구입		

(단위:천원)

관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일 반 행정비	자치행정	정보통신 관 리	205,684			196,184		
			(2,300)	(2,300)		0	일반업무용 노트북PC구입	
			(7,200)	(7,200)		0	문서편집대회 시상금	
		재무행정	회계관리	435,303			296,654	
				(1,231)	(1,231)		0	대형승합(신규) 자동차세,보험료 검사수수료
				(5,318)	(5,318)		0	대형승합(신규) 차량선택비
	재물관리	재물관리	(2,100)	(2,100)		0	봉급전산관리 PC구입	
			(209,000)	(130,000)		(79,000)	차량구입 자산·물품취득비	
			836,914			772,425		
		(52,889)	(52,889)		0	공공시설검사, 정비지원상환, 배상공제		
		(11,600)	(11,600)		0	관사가스집합 설비 공사비		
사 회 개 발 비				80,764				
교육 및 문 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476,700			474,700		
			(5,000)	(2,000)		(3,000)	장승축제	

(단위:천원)

관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모덕사 운영	123,536			111,536		
			(12,000)	(12,000)		0	모덕사정문 표주석 설치외2건	
		체육진흥 관리	210,684			209,544		
			(1,140)	(1,140)		0	외래강사수당	
		환경관리	56,291			47,924		
			(8,367)	(8,367)		0	쓰레기제거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	가정복지	1,780,796			1,780,196		
			(600)	(600)			충효예교실표창장 제작및수여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1,092,20			1,088,420	
				(3,800)	(3,800)		0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장비구입
도시개발		도시관리	947,136			944,136		
			(9,000)	(3,000)		(6,000)	강관주교체	
	토지관리	96,351						
		(7,600)	(7,600)		0	개별공시지가 산정컴퓨터, 프린터구입		

(단위:천원)

관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지적정보 관리	24,375			28,375	
			(6,000)	(6,000)		0	컴퓨터 2000년 문제주전산기 교체(PC)
	지역사회 개발	지역개발	1,472,318			1,436,061	
			(36,257)	(36,257)		0	초화류식재 및 도로면 제초인부임
경제개발비				63,007			
농수산 개발	농정관리	농정관리	1,559,910			1,542,376	
			(25,050)	(17,535)		(7,515)	취약지 제초제 지원
		농산물 유통관리	92,129			89,879	
			(2,950)	(2,250)		(700)	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
	축수산 진흥	축산행정	558,260			556,260	
			(2,000)	(2,000)		0	가축약품보관용 냉장고
	농촌진흥	농촌지도	1,096,197			1,085,697	
			(15,000)	(10,500)		(4,500)	WTO소득작목 개발재료
국토지원 보존비	산림자원 개발	산림관리	1,018,886			99,164	
			(30,000)	(14,700)		(15,300)	다목적 산림 차량구입

(단위:천원)

관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산림관리	(13,389)	(5,022)		(8,367)	일용인부임 (시가지가로수정비 가로수시비, 노선 가로수제초, 휴양림 산막청소)
		조림관리	1,856,537 (12,000)	(6,000)		1,850,537 (6,000)	임업협동조합 운영지원
	건설관리	건설행정	405,772 (5,000)	(5,000)		400,772 0	공원안내표지판 이전설치
민방위비				1,500			
민방위 관리	민방위 관리	민방위 관리	47,555 (1,500)	(1,500)		46,055 0	방독면구입비
사회개발비(읍면분)				1,116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 관리	체육진흥	2,116 (1,116)	(1,116)		1,000 0	지천변하상공원 제초인부임

· 특별회계(세출)

(단위:천원)

관	장		단체장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후 예산액	수정이유와 내역
	항	세항		감액	증액		
합 계				14,300			
사회개발비				14,300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	환경관리	상하수 관리	506,457 (19,126)	(14,300)		492,157 (4,826)	정산상수도(가스 밸브통교체, 송배 수관수선, 계수변 교체, 수도계량기, 수중모터수선

## 11. 第8次 本會議

### 가. 1999년도 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1998. 12. 9.                      ○ 심사보고일 : 1999. 12. 21

- 처리결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유성중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나.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제출연월일 : 1998. 12. 15.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승인받고자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함께 1998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액	제3회추경예산액	증 감
계	97,117,300	97,054,117	△63,183
일반회계	78,041,112	80,569,130	2,528,018
특별회계	19,076,188	16,484,987	△2,591,20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998년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

마. 휴회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휴회 키로 하였다.

## 1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토론이 있었다.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질의·토론이 있었다.

###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항목별 설명과 이에따른 질의·토론이 있었으며,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있었다.

## **나.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1차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항목설명과 질의·토론이 있었다.

###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제1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토론이 있었다.

## **다.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다.

## **라.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13차 예결특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다.

###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계속)**

제11차, 제1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키로 하였다.

**(3)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11차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하였다.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심사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

◇ 예산총칙수정안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	수 정 예 산 안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71,340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1,940천원으로 한다.

◇ '8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총 괄

< 세 입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97,054,117	-	-	97,054,117	-
일반회계	80,569,130	-	-	80,569,130	-
특별회계	16,484,987	-	-	16,484,987	-

< 세 출 >

(단위:천원)

회 계 명	단체장제출 예 산 액 (A)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비율 (B/A) %
		감 액	증 액(B)		
계	97,054,117	10,600	10,600	97,054,117	0.013
일반회계	80,569,130	10,600	10,600	80,569,130	0.013
특별회계	16,484,987	-	-	16,484,987	-

○ 삭감액 조서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관	장 항	세항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수 정 액		수 정 후 예 산 액	수정이유와 내 역
				감 액	증 액		
합 계				10,600			
일 반 행 정 비							
일반행정	내무행정	서무관리	108,011			169,411	
			(14,600)	(10,600)		(4,000)	발간실 운영

### 13. 第9次 本會議

#### 가. 1997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 예결특위 회부일 : 1998. 12. 21.      ○ 심사보고일 : 1998. 12. 26.
- 처리결과

1997년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유성중 예결특위 위원  
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회계별구분	구 분	예산현액 ①	결산		
			세입②	세출③	이월액④ (B/C)
계		130,303,647	125,964,943	93,706,060	32,258,883
일반회계		103,161,968	100,740,571	79,235,941	21,504,630
특별회계		27,141,679	25,224,372	14,470,119	10,754,253
	상수도사업	2,429,237	2,454,582	1,997,263	457,319
	주택사업	225,135	225,498	220,470	5,028
	새마을소득사업	206,312	221,439	125,335	96,104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04,383	197,119	145,000	52,119
	농공단지조성	11,177,915	11,098,861	4,862,260	6,236,601
	하천골재판매사업	7,162,170	5,299,484	5,295,635	3,849
	지역개발사업	4,506,873	4,508,499	673,388	3,835,111
	주차장운영	86,490	75,534	8,720	66,814
	의료보호비	1,143,164	1,143,356	1,142,048	1,308

나.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

- 예결특위 회부일 : 1998. 12. 21.      ○ 심사보고일 : 1998. 12. 26.
- 처리결과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견에 대하여 유성종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예결특위 회부일 : 1998. 12. 21.      ○ 심사보고일 : 1998. 12. 26.
- 처리결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성종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6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다.

**다. 휴회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8일 휴회기로 하였다.

**14.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가.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견**

199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기로 하였으며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1. 청양소식지 발간 배부현황	· 군민투고내용 게재 및 주민 배부 실태가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미흡 한 실정임을 지적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2. 상부기관 감사실시 현황과 결과 및 지적 사항 처리결과와 징계 현황	· 농공단지관련 및 산림분야 감사지적사항으로 편중된 이유	
	3. 청양군 고문변호사 활용상황	· 고문변호사 선임의 필요 여부	
	4. 애향장학회 기금관리 현황	· 애향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실태	
	5.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	· 가칭 “농민회관” 건립이 늦어진 이유 · 계획된 사업의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촉구	
	6. 계류중인 소송현황과 전망	· 고문변호사 활용 촉구	
	7. 먹는샘물 제조사업	· 공장설치, 판매장 확보등 차질없는 사업추진 촉구	
종합민원실	1.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 일부 지가가 이의신청을 받아 상향조정된 이유	
	2.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민원을 반복 접수하여 반려 및 불허가 처리한 실태	
	3.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치실태	
	4.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현황	· 미수금 징수 촉구	
자치행정과	1. '97, '98공무원 공채, 특채현황 및 배치, 보직현황	· 채용된 공무원중 관외 거주 실태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자치행정과	2. 공설운동장 관리계획 및 추진상황	· 공유지인 공설운동장의 군유지와 의 상호교환 촉구	
	3. 생활민원사업비 집행 내역	· 주민불편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실태	
	4. 이·반장현황 및 처우 실태	· 장기근속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책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이장년령 제한의 불합리한 점 지적	
	5. 복수직렬 현황 및 현 임용직렬 현황	· 부서별 특성에 맞는 직렬 임용 촉구	
	6.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실적	· 학업성적의 기준완화를 통한 수혜 폭의 확대 가능 여부	
	7.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 군정원로회의 실질적인 운영성과 및 효과	
	재 무 과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	· 종합토지세 및 취득세의 미수사유 및 체납액 징수대책
2. 공사계약 현황		· 관내 업자 보호차원의 공사도급 시행 실태	
3. 지방세 과오납급 처리현황		·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동명이인의 경우 타인의 종합토지세가 같이 부과되는 사례 지적	
4. 지방세 체납액 내역 및 결손처분 내역		·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5. 관용차량 보유 및 운전원 현황		·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운행실태	
사회복지과	1. 화성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시행내역	· 납골당 하자부분지적 및 향후 처리대책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사회복지과	2. 읍·면 복지회관 활용실적 및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 복지회관 활용실적 저조 및 관리부실 지적 · 활용도에 비하여 유지관리비의 과다 소요 지적	
	3. 노인회관 지원 현황	· 지원실태 및 미지원 경노당의 지원방안 강구 여부	
	4. 지체장애자 등급별 현황 및 지원현황	·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사항 적기 홍보 촉구	
	5.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촉구	
환경보호과	1.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재활용창고 활용현황	·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태 · 재활용창고 활용도 미흡 지적	
	2.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황 및 처리시설 운영내역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가동실태	
	3.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추진상황	· 읍·면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를 대비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조속한 추진 촉구	
	4.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등 지연사유 해소대책 추진 촉구	
	5. 청양읍 하수도 송수관 시설 및 정산상수도사업 추진현황	· 청양읍 상수도 누수율 및 누수율 감소대책	
농 립 과	1. 밤나무 재배농가 동해피해 융자금 지원현황	· 융자금 지원 기준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농 립 과	2.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 및 활용실적	· 농기계 보관창고의 토지, 간물 관리실태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강구 방안	
	3. 영농법인 지원 현황	· 사업비가 지원된 영농법인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법인에 대한 대책	
	4. 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및 사업포기자 현황과 조치내역	· 사업포기자중 상환불가능자에 대한 대책	
	5. 초지조성현황 및 지원내역	· 하급초지 발생사유 및 초지의 철저한 관리 촉구	
	6. 산림입지조사 및 영림계획서	· 영림계획 수립의 불합리성 지적	
	7. 가축질병예방사업 추진현황	· 소 브르세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축 피해실태 및 조치상황	
	지역경제과	1.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 정산시장 관리계획 방안
2. 농공단지 미분양지 및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상황		· 계약불이행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 촉구	
3. 농공단지 원리금상환 및 미상환 내역		· 연도별 상환연체액 규모 및 미상환에대한 대책	
건설도시과	1. '98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오지개발사업 선정 기준	
	2. 수방자재 비축현황 및 재해대책비 집행 실적	· 수방자재 보관 실태	

소관부서	사 항 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건설도시과	3.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현황	· 소류지내 퇴적된 토사의 준설대책	
	4. 각종 공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 추진내역	·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지출상황	
보건의료원	1. 의약품 구입 및 재고 현황	· 의약품 품목별 재고실태 · 장기간 사용치 않은 의약품 재고실태 지적 ※의약품 재고현황 현지확인	
	2. 입원실 현황 및 입원 환자 현황	· 환자 입원실적이 저조한 사유	
농업기술센터	1. 건강관리실 관리 및 운영상황	· 건강관리실 활용도 제고 방안	
	2.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실적	· 농한기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 계획 수립 추진 여부	

◇ 시정 및 요구사항

(기획감사실)

1. 청양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있어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소식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할 수 있도록 주민 투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배부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가능한 적정부수를 발간, 철저하게 배부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2.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중 회수조치된 사항의 사업은 사업비가 회수된 만큼 부실시공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사업의 완벽한 완료대책 강구 요망

3. 애향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우수학생 양성대책 강구
4. 주요시책사업 심사분석결과 미진된 사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요망.
5. 각종 소송제기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강구 요망.
6. 농민회관 건립 사업이 현재 가칭 농민수련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의 부진사유를 감사차원에서 밝혀줄 것을 요망.

(종합민원실)

1.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민원을 반복 접수하여 계속해서 불허가 또는 반려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민원처리 요망.
2.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단속 활동 강화 요망.
3.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의 정산서 징취후 철저한 부과 조치 요망.

(자치행정과)

1. 내고장 주민등록갯기운동 차원에서 관외거주 공무원의 주소지를 본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민원사업의 적기 해결을 위한 대책 (읍·면장에게 예산 사전배정 등) 추진 요망.
3. 국유지인 공설운동장과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이 늦어진 사유를 밝히고 향후 공설운동장의 완벽한 관리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망.
4. 장기근속(15년)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시상제도 강구 추진 요망.
5.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혜폭 확대방안 강구 요망.

(재 무 과)

1.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력 추진 요망.
2.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동명이인의 경우 타인의 종토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요망.
3.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활용대책 강구 요망.

(사회복지과)

1. 화성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의 납골당 및 묘역등 하자부분에 대한 완벽한 하자보수 조치 요망.
2. 읍·면 복지회관 관리 및 활용도 극대화 방안 강구 요망.
3. 미지원 경노당 지원 대책 추진 요망.
4. 장애인 복지대책 추진사항 적기 홍보 요망.

(환경보호과)

1. 재활용 창고의 적극적인 활용대책 강구 요망.
2. 청양읍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수거 처리지역 확대 방안 강구 요망.
3.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지역 주민 이해설득을 통한 원만한 협의로 조속한 추진 요망.
4.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위치선정 결정을 위한 용역은 사전에 예 정지를 밝혀 주민과 협의결정하여 추진 요망.

(농 립 과)

1.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농기계 보관창고의 활용극대화 방안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요망.

2. 정부융자지원 영농법인에 대한 사업추진 지도 철저 및 사후관리 대책 강구 요망.
3. 영림계획의 수립시 사전에 산주와 협의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 이후 계획과 집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망.
4. 불법농지전용 사전 방지대책 강구 요망.

(지역경제과)

1. 정산시장 입점후 상가 관리대책 철저 요망.
2. 농공단지 원리금 미상환 업체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요망.
3.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공영버스노선 재검토 및 노선 증설 검토 추진 요망.

(건설도시과)

1. 오지개발사업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요망.
2. 소류지내 퇴적된 토사 준설대책 추진 요망.
3. 각종 공사편입토지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절감 방안 강구 요망.
4. 사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실효성 없는 사업을 지양하고 현실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제조정하여 기반시설사업 등을 우선 추진요망.

(보건의료원)

1. 장기간 재고로 방치하고 있는 의약품 처리 조치 및 계속 사용중인 의약품의 적정 재고 유지 요망.

2. 입원실 활용 극대화로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요망.
3. 치과 유니트등 노후된 의료장비와 고장 방치되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요망.

(농업기술센터)

1. 농기계이동수리반 농한기 운영대책 강구 요망.
2. 각종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많은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15. 第10次 本會議

### 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견

○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윤명희 위원장이 보고하였다.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감사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1998년 12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나.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제출연월일 : 1998. 12. 24.      ○ 제출자 : 청양군수

○ 제안이유

출자목적인 지역주민 소득원 개발과 정기적인 업무지도로 민간자율 운영 토대가 마련되어 '98. 10. 21 청양군 출자지분 매각과 '98. 10. 22(주) 청양유통 감사직 사임으로 완전 민영화되어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1998년 12월 2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청양유통주식회사출자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금강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협약사항개선건의안**

○ 제안년월일 : 1998. 12. 28.      ○ 제안자 : 우봉명의원외 9인

○ 제안이유

1995. 11. 21자로 체결한 금강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 협약내용중 수익금 배분비율이 계약당시 도 40%, 군 60%이던 것이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99년도부터는 도 70%, 군 30%로 배분토록 협약되었으나

30%의 이득금 배분으로는 판매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순 이득금은 15% 이내로 이는 매우 불합리한 협약 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익금 배분율을 최소한 도 50%, 군 50%로 재조정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골재판매가격 결정권한을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본회의 심의결과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건 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 의 문

날로 발전하는 도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대평지사님께 새해에 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청양군에서 간접직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강하천골재채취 · 판매사업이 1995. 11. 21자로 도(백제문화권개발소장)와 금강하천구역내 4개 시장 · 군수가 체결한 골재채취업무대행 협약에 의거 계약당시 수익금 을 도 40%, 군 60%로 배분하였으나 군의 배분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99년도부터는 도 70%, 군 30%로 배분하게 된 바 그동안 골재채취 · 판 매사업을 운영한 결과 당초 수익금 배분 협약내용이 불합리하여 재협약하 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청양군의 자체재원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및 골재채취수익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골재채취 수익금의 배분비율이 축소되고, 타 시 · 도 및 인근 시 · 군보다 지리적으로 입지여건이 불리한 조건임에도 골재판매

가격이 높아 금년도에는 목표량의 48%만 판매되는 등 판매부진으로 재정 형편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4.7%로 예상되며 각종 사업비중 군비 미부담액이 57억 5천만원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더욱이 하천골재채취·판매사업은 인근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자주발생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하며, 인건비, 경상비등 직접경비가 30%정도 소요되고 또한 판매가 부진하여 이를 상계할 경우 실질적인 군이득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95년도에 체결한 금강하천골재채취사업업무대행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수익금 배분비율을 최소한 도 50%, 군 50%로 재조정하여 주실것과 골재판매 가격 결정권을 군에 주어 군수가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판매가격을 자율 결정하여 수익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도로 열악해진 군 재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12. 29

청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 라.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제64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형직의원, 우봉명 의원이 선출되었다.